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12.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2025년 4월 10일”을 “2027년 4월 10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2025년 4월 12일”을 “2026년 4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23”을 “6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0”을 “593”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삭제한다.

8. 제43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4월 12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6급 이하	10

대통령령 제329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별표 2 및 별표 5(노사관행개선과를 폐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제42조의2제1항 및 별표 5(노사관행개선과를 폐지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별표 5]

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2조의2제4항 관련)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4월 1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u> <u>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u> <u>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u> <u>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시정에 관한 사항</u> <u>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u> <u>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시정에 관한 사항</u> <u>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u>	<u><삭 제></u>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43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 ⑤ (생략)

⑥ ~ ⑧ 삭제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

----- 2027년 4월 10일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③ ~ ⑤ (현행과 같음)

⑨ -----

----- 2026년 4월 12일 -----

-----.

<삭 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
관에 둔다.

⑪ (생 략)

대통령령 제32953호 고용노동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
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
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
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
다.

⑪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953호 고용노동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3</u>	<u>626</u>	+3
·	·	·	
·	·	·	
일반직 계	<u>617</u>	<u>620</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0</u>	<u>593</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